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거 명령의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보고·검사 근거 마련 등〉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14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수거 명령의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보고·검사 근거 마련	3
2. 수거 권고 불이행 사실 및 수거 명령 사실의 공표 의무화	7
3. 사업자에게 수거 명령을 받은 사실과 조치결과의 공개 의무 부여 ...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8.
3. 회부연월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가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43조).

Ⅲ. 검토의견

1. 수거 명령의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보고·검사 근거 마련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수거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①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② 어린이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함)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의 조치결과 보고만으로 명령의 이행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사업자에게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②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품 수거, 관련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제1항제2호²⁾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에게 보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³⁾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품안전기본법」⁴⁾은 사업자가 제품 수거등의 권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제조·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2.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고 및 검사의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4)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제10조·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근거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 수거명령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어린이제품 수거 명령 이행점검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거 명령 이행점검 건수	362	667	675	462	54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거 권고 불이행 사실 및 수거 명령 사실의 공표 의무화

개정안은 사업자가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u>공표할 수 있다.</u> ③·④ (생략)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공표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u>공표할 수 있다.</u> 1. ~ 3. (생략)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 ----- ----- ----- <u>공표하여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현행법⁵⁾은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및 사업자에 대하여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 및 수거등의 명령 사실의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고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과 행정기관의 수거등의 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의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과 행정기관의 수거등의 명령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권고 불이행 사실 및 명령 사실의 공표 의무제도가 도입될 경우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 ④(생략)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 ④(생략)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① 「제품안전기본법」 6)도 현행법과 같이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과 수거등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든 수거 명령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어린이제품 수거권고 불이행 사실 및 수거명령 사실 공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거권고 불이행	-	-	-	-	-
수거권고 불이행 사실 공표	-	-	-	-	-
수거명령	282	187	169	129	122
수거명령 사실 공표	282	187	169	129	12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6)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 ⑤ (생략)

3. 사업자에게 수거 명령을 받은 사실과 조치결과의 공개 의무 부여

개정안은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받은 사실 및 조치결과를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u>공표할 수 있다</u> . 1. ~ 3.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u>보고</u>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 ----- ----- ----- ----- <u>공표하여야 한다</u>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u>명령을 받은 사실 및 조치결과 등의 사항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조치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공개와 보고</u> ----- ----- -----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25. (생략) ④ (생략)	③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 또는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u> 2.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령⁷⁾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신문, 방송 또는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생략)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제품 사진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 권고의 사유와 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직접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과 조치결과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사업자가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결과는 신문, 방송 또는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결과 등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명령 사실 및 명령 조치결과의 공개의무가 부여될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 수거등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 강화 및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 해당 사실의 직접 공표와 함께 수거등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 수거등에 관한 사

항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소비자 인지가 높아져 제품 수거 등이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제43조제3항제1호의2)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43조제3항제1호⁸⁾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제43조제3항제1호와 제43조제3항제1호의2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7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